

의안번호	2206263
의 퇴 인	채현일의원
회 답 일	2025.2.11.
추계번호	24D5735

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7조제1항 (사전재난영향평가위원회)	사전재난영향평가의 심의사항 중 ‘피난시설의 설치 및 피난유도 계획’에 재난 발생 위치 및 확산 상황을 감지하여 안전한 피난경로와 대피요령을 안내하는 가변식 대피안내를 포함하도록 규정	의무규정
2	안 제14조제3항 신설(교육 및 훈련)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가 관계인, 상시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재난 및 테러 등에 대한 교육·훈련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7조제1항 (사전재난영향평가위원회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14조제3항 신설(교육 및 훈련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가변식 대피안내를 포함한 피난유도계획 수립(안 제7조제1항)

-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관리주체에는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체가 포함되어 있어 개정안에 따라 가변식 대피안내를 포함한 피난유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련 피난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－ 가변식 대피안내를 위하여 인공지능,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의 개발 및 활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
- 다만, 중앙행정기관 등이 관리하고 있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가변식 대피안내 여부 및 현황, 가변식 대피안내용 피난시설의 종류 및 평균 비용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가 곤란함
 - － 참고로 소방청에 따르면, 2023년 기준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사 등이 관리주체인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수는 약 12개 동이 있고 지하철 역사와 연계된 청사에 해당함

□ 초고층 건축물 관련 재난 등에 대한 교육 및 훈련 지원(안 제14조제3항 신설)

- 개정안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장비구비 및 시설 설치, 인력 증원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－ 관할 소방관서에서 관할 구역 내 주요 초고층 건축물 등에 대하여 소방점검, 합동훈련 등을 현행법에 따라 이미 실시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, 개정안에 따라 교육 및 훈련 지원 대상이 되는 초고층 건축물 등의 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
- 다만,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관련 재난 등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의 구체적인 내용, 필요한 장비와 시설의 종류, 인력의 증원 여부 및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가 곤란함
 - － 참고로 소방청에 따르면, 2023년 기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수는 총 475개 동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이미연	김안나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미연	02-6788-4661	mylee@nabo.go.kr